

분말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8) 일부개정(안)

1. 제 · 개정 이유

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(수동) 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,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(2.8.3)

나. "호스릴할론소화설비"를 "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"로 함
(2.3.2.3, 2.8.3, 2.8.4, 2.8.4.4 및 2.8.4.5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